

『재산영농조합법인』 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2. 5. 8 평창군수(농업경영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2. 5.
- 다. 상정일자 : 2002. 5. 15 제9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제2차 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지방재정법 제10조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,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의 「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」 용자금대출액 20억원에 대한 평창군의 채무보증액중
- 2002년에 상환 도래되는 자금 134,440천원에 대하여
-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01년 「농가부채대책특별법」에 따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차 지원되는 중장기 정책자금을 장기분할로 지원받음에 있어
- 2001년 470,000천원 자금대환 조치에이어 2002년에 도래되는 원금 134,440천원에 대하여 평창군수의 채무보증 신청에 있어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안함.

3. 주 요 글자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 법인의 「성장작목 시범단지조성사업」 용자금 20억원을 '92.6.29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'92년 7월 14일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으로 '92.8.31일 용자실행 하였음.
- 정부에서는 매년 누적되는 농가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 자금을 농업인 및 농업법인체를 대상으로

- 2001년 ~ 2003년까지 3년간 상환도래되는 원금을 7년간(2년거치 5년 균분상환)연기하여 농업경영체의 부채상환 능력제고 및 농촌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.

- 따라서 재산영농조합 법인에서는 2001년에 470,000천원에 이어 2002년에 도래되는 원금 134,440천원에 대하여 「농가부채경감특별대출자금」을 지원받아 상환기간을 7년간 연기코자함.
- 본 농가부채대출자금은 연리5%의 금리로 담보 또는 농림수산업신용보증에 의한 신규대출 형식으로 지원되나,
- 법인소유의 담보물건이 없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 의한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본 자금대출에 대한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을 요청하였음.

4. 검토결과

- 먼저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채무보증 및 지원내역을 살펴보면
 - 성장작목 투자사업비는 총 50억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21억원 도비 11억 6,400만원이 간이 집하장, 농산물포장센터·공동 퇴비 제조장 및 교육장 각1동에 투자되었음.
-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50억원중 융자액 20억원에 대하여 평창군수가 '92.6.29 평창군의회 의결을 거쳐 동년 7월 14일 채무보증 하였음.
- 금번 채무보증 내용은 2002년 상환 도래되는 자금134,440천원에 대하여 「농가부채경감특별대출자금」을 지원받아 대환하므로 상환기간을 7년간 연기코자 하려는 것임.
- 그간 경영컨설팅을 통한 구조개선과 난방방식 변경등 행정지원과 함께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경영의 정상화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채무보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